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3. 2.



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개방형직위에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.

2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28. ~ 3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”을 “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「법제처 직제」 제16조에 따라 <u>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</u>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1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----- -- <u>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